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3.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3.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 제출일자: 2022. 3. 4.(금)
- 회부일자: 2022. 3. 4.(금)
- 검토기간: 2022. 3. 7.(월)~2021. 3. 11.(금)

## 2.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와 즉각 분리하여 전문적인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해 새롭게 설치·운영하는 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을 아동복지사업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종사자	개소예정일	비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	달서구 관내	전용면적 100m <sup>2</sup> 이상 (방 4개, 화장실 2개)	6명	6명	2022. 10. 예정	

※ 종사자 6명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치료사 1명

#### 나. 위탁개요

##### ○ 위탁내용

-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일상생활 훈련)
- 상담 및 심리치료(심리검사 등), 교육 및 정서지원(학업지도 등)
-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사, 회계, 시설 및 품목 관리 등

○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2022. 10. ~ 2027. 10.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 4.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연 2회 이상 신고·접수된 아동을 부모와 즉각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을 설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2016년 18,700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65%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38,929건으로 이중 대구광역시는 1,719건 4.4%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아동 학대 사망사고는 2015년 16건에서 2020년 43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2020년 10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72개소로 이중 41개소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80%가 넘고, 정원의 100% 이상을 보호하는 쉼터도 21개소에 달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아동학대 발견율이 2015년 1.32%, 2020년 4.02%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대피해 아동쉼터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함.
- 대구광역시에는 현재 여아전용쉼터와 남아전용쉼터 각각 1곳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정원은 10명에 불과해,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는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고, 그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 또한 그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상자가 1차 피해를 입은 아동인 점을 감안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구분	2020	2019	2018	2017	2016
계	30,905	30,045	24,604	22,367	18,700
신체학대	3,807	4,179	3,436	3,285	2,715
정서학대	8,732	7,622	5,862	4,728	3,588
성학대	695	883	910	692	493
방임	2,737	2,885	2,604	2,787	2,924
유기	0	0	0	0	0
중복학대	14,934	14,476	11,792	10,875	8,980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대구광역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구분	여아전용쉼터	남아전용쉼터
운영단체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한국SOS 어린이마을
소재지	중구	서구
종사자	4명	4명
정현원	5명	5명
관할구역	대구시 전역	대구시 전역
설치연월일	2005. 7. 1	2015.11.12

출처 : 대구시청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270](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270))

#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위탁운영)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